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7.11.07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/ 성북구 보문동 196-11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7-30-1	심의결과	조건부 의결
<p>[심의 내용] 건축 + 교통 심의</p> <p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건축법」 제4조 및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 17조에 의한 건축·교통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< 건축 분야 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계획분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01, 102동 입면디자인 계획이 단순하게 처리되어 랜드마크적 경관 특성을 잃고 있으므로 발코니 변화 등을 통한 입면 특화계획을 검토 바람. ○ 101동 주민편의시설에서 옥상정원으로의 연계 계획을 검토 바람. ○ 102동에서 주민편의시설의 이용에 대한 불편이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검토 바람. ○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판매시설 1, 2층 화장실의 분산 배치를 검토 바람. ○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764㎡A·B형, 84㎡형 10% 완화 인정함.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분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저층부 코어벽체와 붙어있는 기둥은 벽체의 강도 증대 또는 두께 증가에 의해 삭제 하고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. ○ 구조형태가 상이한 101동, 102동은 개별 건물로 각각 구조 계획하기 바람. <p>< 교통분야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지 동남쪽 회전교차로의 남북방향 접근로에 대한 교통류 분리 안전지대 표시를 넓히고 보도와 연속된 안전지대는 삭제하기 바람. ○ 지상 주출입구 교차로 면적의 축소를 검토 바람. ○ 회전교차로 정보(표지판, 노면표시 등) 계획을 수립 바람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계속 -</p>			

2017.11.07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7.11.07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/ 성북구 보문동 196-11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7-30-1	심의결과	조건부 의결
[심의 내용] 건축 + 교통 심의			
< 교통분야 >(계속)			
○ 지하1층 주차장에 컬러레인으로 용도별 안내정보의 제공을 검토 바람.			
○ 어린이보호차량 승하차 공간은 정형화된 계획으로 확보하기 바람.			
○ 주차게이트의 위치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.			
○ 보고서의 개요 및 도면에 건축용도를 통일하여 표기하기 바람.			
< 공통사항 >			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			
가. 녹색건축물 인증 : 우수(그린2)등급 이상			
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: 1등급 적용, 비주거 절감기술 적용			
다.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%, 비주거 9% 적용			
라.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- 주거 150kWh/m ² ·y 미만, 업무 240kWh/m ² ·y 미만			
마. 지능형 건축물 : 2등급			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.			
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 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			
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			
1) 대지면적 1,000m ²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,500m ² 이상의 건축물.			
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			
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			

2017.11.07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